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촬영물 반포 등의 구성요건 확대〉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96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3.
3. 회 부 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등 신체를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로 합성·편집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가 공유하는 ‘지인 능력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행위는 중·고·대학교, 군인, 간호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 범위가 막대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그런데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임. 범죄 규모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더디다 보니 오히려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수칙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됨.

이에 딥페이크나 몰카 등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

폭력 범죄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Ⅲ. 검토의견

- ☐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의 죄의 구성요건 중 ‘반포등’의 의미에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생략)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u>이하 “반포등”이라 한다</u>)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u>(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u> -- -----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생성·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불법촬영물 등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한 경우 이를 받은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경우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행위’는 그 유포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등 방조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개정안과 같이 ‘불법촬영물’의 직접적인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73